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소와 지원 기관간의 연구용역 또는 기술 및 경영지도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비를 말 한다.
2.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술연구활동을 위하여 교원에게 지원하는 정부기관, 각종 연구지원재단, 기업 및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중에서 징수 또는 납부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부서) ①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다만, 연구소 명의로 계약된 과제의 경우 그 연구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일부를 연구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연구소의 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진흥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조 제1항의 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3장 7조 및 9조에 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②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④간접비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⑤기타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연구비 관리

제7조(관리 원칙) ①연구비 및 연구 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장이 총괄 관리하고, 모든 연구비에 대해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②연구비는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④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제8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 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수납 및 집행) ①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 청구서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연구소의 장은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및 수령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연구비의 지급은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며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
- ④연구비중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⑤연구비중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기기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구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 ⑥기기구매의 경우 소정절차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 ⑦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대응자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1.12.1>
- ⑧산학협력단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및 법인카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12.1>

제10조(연구비의 사용) ①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②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연구비의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간접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 ④직접비 내 연구수당 지급은 연구책임자 및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에 따른 비율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연구책임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전체 수당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12.1>

제11조(연구비의 수령 보고) 본교 교원이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

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그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진행이 극히 부실한 때
3.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연구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5. 연구논문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연구계획을 임의 변경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때
9.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본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4장 연구간접경비관리

제13조(연구간접경비의 징수·사용·관리) 연구간접경비의 징수·관리 등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장 연구지원 및 관리

제14조(이자)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연구간접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15조(물품의 귀속) ①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물품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결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및 그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본조 제1항에 의한 귀속물품은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이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한다.

제16조(관리서류의 비치) ①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소의 장은 연구비 수혜연도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비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소의 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기타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연구종료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적은 연구전산망에 입력하고 실적등록신청서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소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의 활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결과물을 수합하고 연구실적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기타 지원) 연구관련 지원내용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학술연구비 중앙관리규정에 의해 진행된 연구과제(교내연구비 제외)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